

2024. 3. 26.(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 선 미	02-2133-6680
-------	-------	--------------

법제심사팀장	송 학 용	02-2133-6690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9매

담 당 자	신 영 미	02-2133-6689
-------	-------	--------------

법무행정 서비스	<a href="http://legal.seoul.go.kr">http://legal.seoul.go.kr</a>	
----------	---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 조례 공포안 목록

서울특별시는 2024년 3월 19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24. 3. 26.(화)
  - 조례 : 46건(제정 11, 개정 35)
- 2024. 3. 29.(금)
  - 조례 : 1건(개정 1)
- 2024. 4. 11.(목)
  - 규칙 : 5건(제정 1, 개정 4)
- 공포방법: 시보 게재

○ 2024. 3. 26. 공포(46건)

연번	조례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인사과
-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버스정책과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함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시의회의정담당관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심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탄력적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심사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시의회인사담당관
-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외출장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면적을 계획의 적정성 여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함</li> <l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되며 용적률을 최대 400퍼센트까지 부여할 수 있게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함</li> <li>-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에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 기준을 정비함</li> </ul>			
6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총무과
-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조 및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7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교통정책과

연번	조 례 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5만㎡ 이상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함		
8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교 통 운 영 과
	- 최근 개정된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가 포함되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소상공인담당관
	- 소상공인의 날 및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 및 지원하고, 작업장의 디지털화,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함		
10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정	평 가 담 당 관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1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문 화 정 책 과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종로구 성균관, 강서구 양천향교 및 도봉구 도봉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		
12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박 물 관 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3. 7. 18.)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		
1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박 물 관 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3. 7. 18.)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		
1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버 스 정 책 과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신설함		

연번	조 례 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15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버 스 정 책 과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마을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신설함			
16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학 생 과
- 장학금 종류에 서울장학을 신설하여 시장장학, 서울장학 I, 서울장학 II로 규정하고 장학생의 선발방법 및 지급인원을 대학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17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정	시 민 협 력 과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8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창 조 산 업 과
-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제’에 한정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의 지원도 추가함으로써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19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개 정	도 시 재 창 조 과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서울 도심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들을 정비함			
20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조 경 과
- 야간 도로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가로등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함			
21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교 통 운 영 과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조항을 신설함			

연번	조례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2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체육정책과
- 시장으로 하여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및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여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을 유도하며,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 관람권사용료를 10%→8%로 하향하고, 명칭사용권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함			
2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버스정책과
- 서울시 시내버스의 수소·전기버스 차량 도입 현황을 반영하여, 안전 점검 규정에 “CNG 용기” 를 “연료용기 또는 전기 배터리” 로 수정함			
2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버스정책과
- 서울시내 마을버스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에서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 안전 점검 규정에 “CNG 용기” 를 “연료용기 또는 전기 배터리” 로 수정함			
25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평가담당관
- 서울시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인공지능사업의 계획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전략과제 지원 사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			
26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협력과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관하여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2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소상공인담당관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함			
28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	자연생태과 공원여가사업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계획 수립, 사업추진,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산림치유지도사 활용 등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9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경과
- 도시녹지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한 협약체결과 물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식수목·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연번	조례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30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뷰티패션산업과
- 도시형소공인 업종의 신규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대학 등 기관과 도시소공인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함			
31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의회 인사담당관
-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시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32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도시재창조과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하고 세운광장의 정의 등을 정비함			
3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 공공시설내 매점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3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택시정책과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범위를 조례에 명시함			
35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협력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6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교통정책과
- 도시철도, 노선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과 역사, 정류소 등 혼잡도가 매우 높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혼잡도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연번	조 례 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3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시 의 회 인 사 담 당 관
-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8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정	안심돌봄복지과
-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만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의 발굴 및 위기극복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시와 자치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9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정	뷰티패션산업과
-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복 지 정 책 과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위탁의 규정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수탁자의 수행능력 기준을 추가하며, 수탁기관 임원의 관리능력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한 임원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 정지를 규정함			
41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 정	문 화 정 책 과
- 균형 잡힌 시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각종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함			
4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시 민 협 력 과
-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43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안건을 동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육청 제출 의안이 여러 조례에 중복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식 교정 등을 통해 비용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하며, 의원과 위원회에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함			

연번	조 례 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44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상권활성화담당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정비사업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의 적용대상인 매장면적 합계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			
45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관 광 정 책 과
-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이 특별관리지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46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서 관 정 책 과
-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 2024. 3. 29. 공포예정(1건)

연번	조 례 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4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택 시 정 책 과
-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음주측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함			

## □ 규칙 공포안 목록

### ○ 2024. 4. 11. 공포예정(5건)

연번	규 칙 명	입법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조 직 담 당 관
- 조례 개정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급이 하향됨에 따라 간사 직급을 책임운영기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조정함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아 동 담 당 관 가족다문화담당관
-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중에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생활안정 지원내용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와 대중교통비, 문화활동비를 추가함			
3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일 자 리 정 책 과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식사비 단가 인상에 따라 수탁자의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산출 기준을 정비함			
4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정	정 신 건 강 과
- 조례에서 위임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평 화 기 반 조 성 과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기금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